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구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기술교류 및 지원으로 지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무명 :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1) 추진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다)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2) 필요성 :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관련 축적된 경험을 지닌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운영 업무 전반

- 1) 반도체특화단지 기반구축 사업 추진
- 2) 반도체산업 기업네트워크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
- 3) 지역 맞춤형 반도체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등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6. 1. ~ 2026.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600백만원(도비 180, 시비 420)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간접비	사업비	비고
600	271	30	299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2025년구미시반도체방산과공공위탁선정심의위원회심의(25.12.31.)

아.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3. 부서 의견

-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산하에 설립되었음
- 이에 따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조성 및 세부육성 계획 수립·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해당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7조

2)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3)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4)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5년 구미시 반도체방산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관련 조례 2026. 1. 1. 시행)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국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경북구미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위탁 시 사업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2025년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소요 예산을 준용하여 산정

※ 사업비(편성예산) : 2023년 400백만원, 2024년 600백만원, 2025년 333.4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인건비	271,000	271,000	271,000	271,000	271,000	1,355,000
	○간접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사업비	299,000	299,000	299,000	299,000	299,000	1,495,000
	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	-	-	-	-	-
도비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900,000
시비		420,000	420,000	420,000	420,000	420,000	2,100,00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000,000

5. 부대의견 :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

6. 작성자 : 반도체방산과 반도체정책팀 김지원(☎480-603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600,000	
인 건 비	27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인건비 4,000,000원x12개월x1명 48,000천원 ·내부인건비 (선임이상 2명, 연구원 1명) 223,000천원
사 업 비	29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정보수집비 22,000,000원x1식 22,000천원 ·기술교육·세미나개최비 10,000,000원x3회 30,000천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비 150,000,000원x1식 150,000천원 ·교육훈련비 1,000,000원x2회 2,000천원 ·파견수당 400,000원x2인x12개월 9,600천원 ·전문가활용비 500,000원x8회 4,000천원 ·국외여비 5,000,000원x2회 10,000천원 ·인쇄비 3,500,000원x2식 7,000천원 ·마케팅홍보비 4,400,000원x2회 8,800천원 ·공공요금 500,000원x6회 3,000천원 ·회계감사비 1,500,000원x1식 1,500천원 ·복리후생비 1,300,000원x3인 3,900천원 ·회의비 300,000원x50회 15,000천원 ·업무추진비 300,000원x20회 6,000천원 ·국내여비 100,000원x20회x6명 12,000천원 ·사무용품비 350,000원x12회 4,200천원 ·연구수당(내부인건비 10% 이내) 10,000천원
간 접 비	30,000	·기관공동운영경비(총 사업비 5% 이내) 30,000천원

소 관 부 서		반도체방산과
입	과 장	전 명 성
안	팀 장	임 진 환
자	담 당 자	김 지 원 (480-6034)